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0-100
----------	----------

제출연월일: 2020년 10월 일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1. 의결 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 이유

강서구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가치와 대표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3. 주요 내용

- 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상징물 종류(안 제1조~제3조)
- 나. 구기의 규격과 사용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다. 상징물의 관리 및 상징물 관련 사업(안 제5조~제7조)
- 라. 상징물의 사용제한(안 제8조)
- 마. 상징물 심의위원회(안 제9조~제11조)

## 4. 참고 사항

-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7.23.~2020.8.12.)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 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상징물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캐릭터 및 자연물, 사업브랜드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기(이하 “구기”라 한다)”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별표 1
2. 캐릭터: 별표 2
3. 자연물: 별표 3
4. 사업브랜드: 구의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로고 또는 캐릭터

**제4조(구기)** ① 구기는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② 구기는 구가 관할하는 각 청사 건물 안팎에 게양할 수 있다.

③ 구기의 게양 방법 및 관리는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 및 제10조

를 준용하며,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④ 구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 등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를 별표 5와 같이 둔다.

③ 제3조제1호,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각표준화 규정집」을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정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사업브랜드를 제작·활용할 수 있으며, 제작된 사업브랜드는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구청장은 제3조제1호, 제2호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 협약 등을 맺어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제한)** 상징물인 휘장, 캐릭터, 사업브랜드는 개인의 영리나 그 밖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적인 사용을 위하여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상징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호, 제2호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징물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9조에 따른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1. 브랜드·마케팅·홍보·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정책과 상징물 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한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자동으로 해체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만들어진 구 상징물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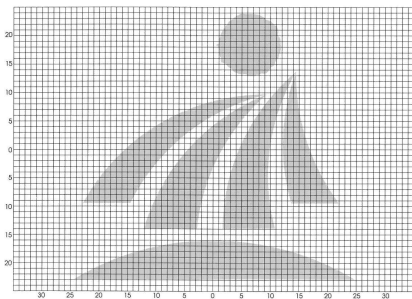
## [별표 1]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호 관련)

### 1. 휘장

#### (1) 기본형



#### (2) 작도법(그리드)



### 2. 휘장의 의미

휘장은 수도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강서의 밝은 미래를 형상화한 것이다. 휘장 아랫부분의 **녹색**은 풍부한 녹지공간과 쾌적함을 상징하며, 가운데 **청색** 부분은 강서의 첫 자음인 ‘ㄱ’과 ‘ㅅ’을 이용하여 하늘과 땅의 길을 상징하는 동시에 산과 까치의 비상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윗부분의 **붉은** 원은 수도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강서구의 미래를 상징한다.

### 3. 색상

■ 강서 초록: DIC No.643 / Cyan100% + Yellow100% + Magenta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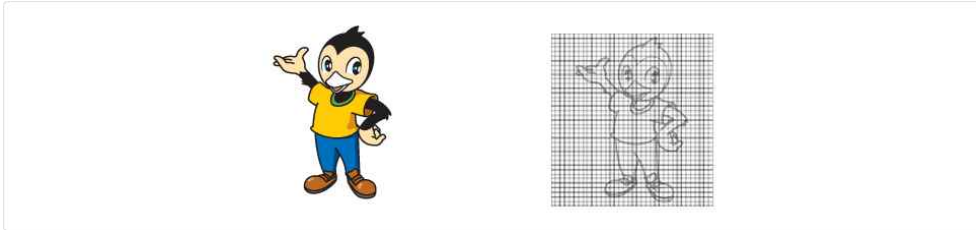
■ 강서 파랑: DIC No.579 / Cyan100% + Magenta 80%

■ 강서 빨강: DIC No.158 / Magenta 100% + Yellow100%

[별표 2]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2호 관련)

1. 캐릭터

(1) 기본형



(2) 변형



2. 캐릭터의 의미

캐릭터 '새로미'는 강서구의 기쁜 소식을 상징한다. 새로미는 친근하고 따스한 '구민의 친구'라는 이미지를 담고 있다.



[별표 3]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3호 관련)

자연물

(1) 구의 나무



은행나무는 나무가 미려하고 청량감을 주며, 거목으로 성장하는 특성은 강서의 무한한 발전을 상징

(2) 구의 꽃



국화는 청순, 평화, 고결 등의 꽃말을 갖고 있으며 늦게 피면서도 서리가 내릴 때까지 오래 볼 수 있는 특성은 강서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상징

(3) 구의 새



까치는 한국의 전설이나 설화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주민들 사이에 사랑의 다리를 놓는 강서구민의 화합을 상징

(4) 구의 상징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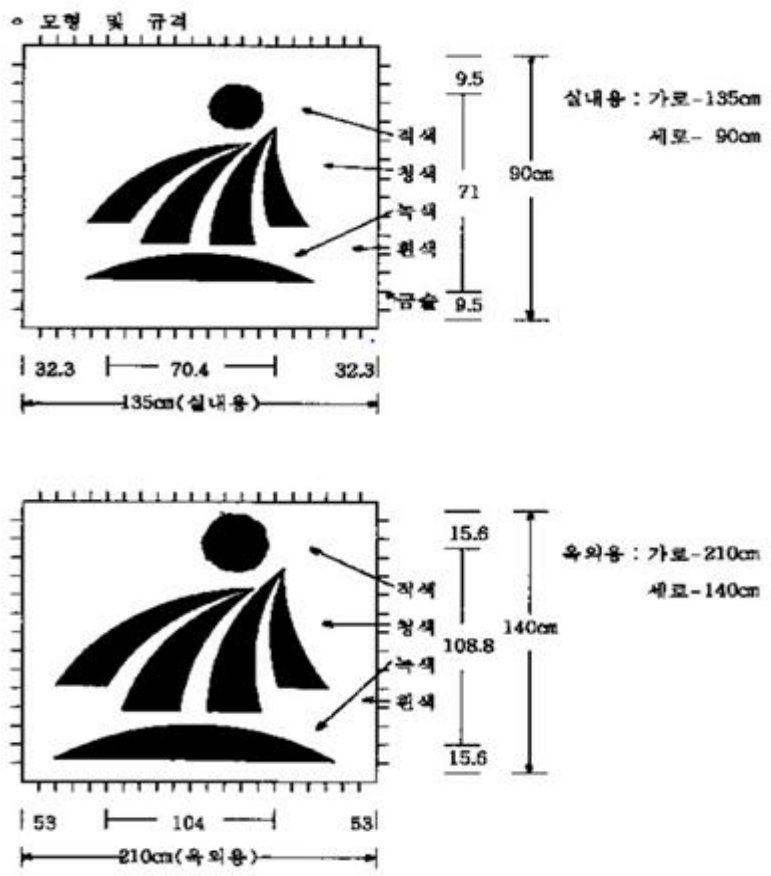
평화와 탄생을 의미하는 초록색은 강서구민의 씩씩한 모습을 상징

[별표 4] 구기의 규격과 모양(제4조제1항 관련)

1. 구기의 규격

- 가. 강서구기는 휘장을 표시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한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하거나 게양하는 현장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알맞게 조정할 수 있다.
- 나. 기면은 흰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의 비례는 3:2로 하되, 옥외용 표준 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실내용 표준 규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 다. 휘장은 기면의 중앙에 표시한다.
- 라. 휘장 아랫부분에 ‘강서구’를 표기한다.
- 마. 휘장을 응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각 표준화 규정집을 활용한다.

2. 구기 모형도



[별표 5] 상징물 관련부서(제5조제2항 관련)

연번	구분	직무 내용	부서명	
1	총괄부서	상징물의 현황 관리	홍보정책과	
2	관리부서	상징물의 사용 및 사용 허가	홍보정책과	
3			구기	행정지원과
4			사업브랜드	각 사업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상징물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상징물 심의위원회 회의 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그 비용이 크지 않고, 본 조례 내용 중 상징물 관련 사업 등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으로 본 의안의 내용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 4. 작 성 자: 기획재정국 홍보정책과 과장 박인수

(담당 : 행정7급 김지민 / ☎ 2600-6589)

#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 □ 제안이유

- 강서구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가치와 대표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상징물 종류(안 제1조~제3조)
- 구기의 규격과 사용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상징물의 관리 및 상징물 관련 사업(안 제5조~제7조)
- 상징물의 사용제한(안 제8조)
- 상징물 심의위원회(안 제9조~제11조)

## □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우리 구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징물의 종류, 관리 방법, 상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20 - 28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홍보정책과	통보(조치)일	2020. 8. 1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조례안 전부		원안 동의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서울강서028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홍보정책과	
	담당자명	김지민	전화번호 02-2600-658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7월 2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홍보정책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강서구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가치와 대표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8월 04일  <b>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b> (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  홍보정책과장 귀하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